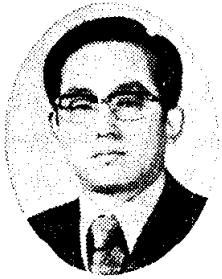


聯結財務諸表

—概念과 作成範圍—



南 相 午
(서울大 經營大 助教授)

I. 聯結財務諸表의 概念

1. 意義와 目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어 온 財務諸表는 個別企業을 中心으로 작성된 個別財務諸表다. 그러나 系列企業과 같이 몇개의 企業이 法律的으로는 獨立의이지만 經濟的으로는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을 때에는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될 수 있다. 外國에서 작성되는 대부분의 財務諸表는 聯結財務諸表다. 世界의 巨大企業인 Exxon, General Motors, Gulf, General Electric, Du Pont 등 우리들 귀에 익은 이들 企業에 대한 世界企業의 順位決定에 있어서도 聯結財務諸表上의 賣出額·純利益·資產 등으로 그 順位를 定한다.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statement)란 法律的으로는 獨立의인 2個 以上の 會社가 經濟的으로는 單一會社로 생각되는 支配·從屬關係의 企業集團을 形成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 一定한 基準에 의하여 個別會社의 財務諸表를 結合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聯結財務諸表는 支配會社(parent company)와 從屬會社(subsidiary company)를 一括하여 經濟的 觀點에서 單一企業으로 보고 작성된 財務諸表이다.

聯結財務諸表에 대해서 企業集團을 구성하는 個別企業의 財務諸表를 個別財務諸表(separate financial statement)라고 한다. 聯結財務諸表의 樣式이나 內容은 個別財務諸表와 거의 類似한데

이는 個別會社의 計定科目을 統合하여 資產, 負債, 資本, 收益, 費用의 各 計定金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聯結財務諸表는 本支店合併財務諸表나 企業結合(business combination)에 의한 合併財務諸表와 類似한 性격을 갖는다. 個別會社의 各 計定科目이 統合되고 內部去來나 內部의 未實現損益, 內部의 債權·債務가 相計되고, 未達去來도 調整된다는 點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는 個別財務諸表나 本支店合併財務諸表, 合併財務諸表와는 다른 점이 많고, 計算도 複雜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聯結財務諸表에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대해서 株式投資를 하므로 投資計定の 相計除去가 必要하고, 投資計定の 評價와 從屬會社株式의 追加購入으로 인한 支配會社持分の 變動, 從屬會社株式의 賣却, 株式의 間接·相互·循環所有 등 株式所有關係가 複雜하게 얽히므로서 훨씬 더 어려운 問題들이 많이 발생한다.

財務諸表規則 第76條(聯結財務諸表)에서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경우와 種類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支配會社)가 다른 會社를 支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會社(從屬會社)와의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 이 경우의 聯結財務諸表는 聯結貸借對照表와 聯結損益計算書로 한다.

② 聯結財務諸表에는 從屬會社(聯結에서 除外된 會社를 포함)의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를

添附한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에 미루어 볼 때에 聯結財務諸表의 種類에는 단순히 聯結貸借對照表, 聯結損益計算書를 가리키고 있으며, 聯結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聯結缺損金處理計算書는 作成義務조차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 從屬會社의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缺損金處理計算書를 添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에는 財務諸表의 種類에 대해서 個別財務諸表와 聯結財務諸表를 區分하지 않고 聯結財務諸表는 個別財務諸表를 단순히 延長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個別財務諸表의 種類와 마찬가지로 聯結財務諸表의 種類에는 聯結貸借對照表, 聯結損益計算書, 聯結剩餘金計算書, 聯結資金運用表를 포함시키고 있다.

聯結財務諸表가 바로 財務諸表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會計規定에는 명확히 定義되어 있지 않지만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된 이상 個別財務諸表를 기초로 작성되는 聯結財務諸表는 財務諸表와 同一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聯結財務諸表에는 聯結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聯結資金運用表와 같은 중요한 附屬明細書도 작성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聯結財務諸表의 作成目的은 기본적으로 財務諸表利用者에게 支配·從屬會社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를 單一 經濟實體(single economic entity)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 自體가 支配會社를 중심으로 數個의 從屬會社를 묶어 작성되는 것이므로 支配會社 中心의 財務諸表라고 할 수 있다.

1959年 발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會計調查公報(ARB,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51에 의하면 “聯結財務諸表는 주로 支配會社의 株主·債權者의 利益(benefits)을 위하여 支配·從屬會社의 財政狀態·經營成果를 支店(branches)이나 事業部(divisions)를 가진 單一會社(single company)처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定義에서 보면

聯結財務諸表란 근본적으로 支配會社의 株主, 債權者를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낡은 思考方式이며 “企業을 둘러싼 모든 利害關係者를 위하여 財務諸表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內容의 1973年 발표된 美國公認會計士會 會計目的研究團의 「財務諸表의 目的」(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에 비추어 볼 때에 聯結財務諸表는 支配會社의 株主·債權者 뿐만 아니라 企業을 둘러싼 모든 利害關係者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聯結財務諸表를 支配會社를 中心으로 작성할 것인가, 企業實體의 側面에서 全體 利害關係者를 中心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支配會社理論(parent company theory)과 企業實體理論(entity theory)이 對立되고 있다. 이들 概念과 類似的한 會計理論의 對照的 概念으로는 所有主理論(proprietary theory)과 企業實體理論(entity theory)이 있어 現代會計에서는 企業實體理論이 得勢하고 있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에 대해서는 아직도 學者들간에 支配會社理論과 企業實體理論을 동등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이 支配會社 中心이라는 뿌리 깊은 思考에서 緣由하는 것이다.

2. 作成經緯

우리나라에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게 된 直接的 契期가 된 것은 大統領令 第7199號에 의해 1974年 7月 公布된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에서 1976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開始되는 會計年度分부터 適用하여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을 義務化하고서 부터이다. 證券去來法에 의거 마련된 위의 規定으로 1976年 7月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도 改正되었다. 이들 規定에서도 聯結財務諸表를 1976年 1月 1日 以後에 開始되는 會計年度부터 適用하도록 되어 있다. (財務諸表規則 附則 ②)

그밖에 聯結財務諸表가 특히 중요시되었던 것은 1973年 5月 발표된 「5·29大統領 企業公開 促進 特別措置」에 의거 制定된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協定」에서 50億원 以上 貸出된 系列企業群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韓

國銀行의 銀行監督院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點일 것이다. 이 協定은 1975年 1月 10日 열린 金融團의 銀行長會議에서 改正하여 對象企業群의 聯結財務諸表에 대한 作成義務을 1975年 12月 31日 以後로 일단 猶豫시켜 다른 會計規定과 함께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時期를 일치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聯結財務諸表가 단지 企業會計上 經濟的 單一體를 한데 묶어서 財務諸表를 작성한다는 企業會計上의 意義 뿐만 아니라 聯結財務諸表를 바탕으로 한 興信管理, 企業公開促進 등 企業管理 또는 企業規制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系列企業을 中心으로 聯結財務諸表가 발표되므로서 投資者에 미치는 영향, 系列企業에 대한 經營分析, 貸出管理, 系列企業이 國家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聯結財務諸表에 대한 社會的 觀心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外國의 경우 個別財務諸表 보다는 聯結財務諸表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傾向으로 나가리라고 展望된다.

聯結財務諸表는 원래 會計學의 體系的 發達에 年條가 깊은 美國에서 由來하고 制度化되었다. 처음 聯結財務諸表를 公表한 會社는 1892年의 National Lead Company, 1894年의 General Electric Company가 嚆矢로서 알려져 있다. 이때에는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方法이나 會計形式이 완전히 確立되지는 않았었다. 美國에서 公認會計士試驗에 聯結財務諸表의 問題가 出題된 것은 1904年 뉴욕州의 CPA試驗, 1912年의 일리노이州試驗에서 비롯되었다.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論文이 최초로 발표된 것은 1906年 A.L. Dickenson에 의한 것이었다.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된 것은 1930年代의 經濟恐慌을 계기로 創設된 美國證券去來委員會(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證券法(Securities Act, 1933年),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1934年)에 따라 上場會社가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有價證券申告書(registration statements)에 添附하는 會計報告書에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에서 緣由하고 있다. 현재 美國의 證券去來

法에 의하면 上場會社는 個別財務諸表뿐만 아니라 聯結財務諸表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非聯結會社의 財務諸表도 結合財務諸表(combined statements)로서 添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財務諸表들은 반드시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畢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關係會社의 去來를 포함한 系列企業의 모든 經理狀況이 公開되는 셈이다.

그후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는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으로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導入되게 된 것이다. 英國에서는 1945年의 「코헨報告書」(Cohens Report)에 의한 1948年의 「會社法」(Companies Act)에 따른 「그룹財務諸表」(Group Accounts), 獨逸의 1965年 「新株式法」(Neue Aktiengesetz)에 따른 「큰체른計算規程」(Rechnungslegung in Konzern), 프랑스의 1968年 「貸借對照表 등 計算書類의 聯結에 관한 報告書」가 公布됨으로써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되었다. 日本에서는 1967年 大藏省 企業會計審議會에서 「連結財務諸表에 관한 意見書」를 발표하였고, 1975년에는 「連結財務諸表原則」, 1976년에는 「連結財務諸表 實施準則」, 「連結財務諸表 作成要領」을 발표하여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따른 基礎作業을 完了하였고 1977년부터 開始되는 會計年度부터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보다는 1年 늦게 制度化가 되었다.

위와 같이 各國에 있어서 聯結財務諸表의 全面的 施行의 強弱은 어느 정도 差異가 있지만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는 世界的 趨勢라고 할 수 있다. 비록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되지 않았더라도 主要企業이 자발적으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나라는 많았다. 예를 들면, 日本에서는 미쓰비시 등 大企業에서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된 1977年 以前에도 美國의 證券去來所에 株式를 上場하고 있는 會社가 많아 美國證券去來法에 따라 이미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가 促進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1968年 制定된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과 1973年 制定된 「企業公開促進法」을 계기로 企業公開의 무드와 證券市場

이 활발해지고, 企業이 大型化, 國際化함으로써 필요하였던 것이다. 또 大企業의 系列企業이 數個의 會社로 分散되어 있고, 家族企業의 성격이 짙은 企業形態가 支配의인 韓國企業의 風土에서는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이 당연히 要求되는 時代的 要請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先進國에서는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製品別 事業部別 會計報告書를 작성하는 部門別報告(segment reporting) 企業의 事業計劃·豫算·未來收益性을 표시하는 財務豫測(financial forecasts), 1년에 한번씩 작성되는 年次報告書 보다는 時期的으로 迅速한 情報를 제공해 주는 中間報告書(interim reporting) 등 까지도 擧論되어 企業의 利害關係者에게 좀 더 많은 企業情報를 제공하는 方向으로 會計情報의 公開範圍를 擴大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趨勢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수많은 系列企業이 동일한 支配會社의 影響을 받아 外見上 1個會社로 보이는 會社로서 事實상 經濟的으로는 單一體인 系列企業群에 대하여 單一財務諸表를 작성하는 것은 企業의 利害關係者나 財務諸表利用者의 立場에서 볼 때에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會社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에서는 支配會社의 株式所有比率이 50%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筆者의 觀測으로는 聯結對象이 되는 企業은 事實상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企業은 美國의 企業에서와 같이 어느 會社가 他會社 株式를 取得하므로써 支配를 하는 所有形態로 成長한 것이 아니고 어느 創業主가 여러 會社에 대한 株式를 個人所有함으로써 家族企業의 財閥企業의 成長過程을 거쳤기 때문이다.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의 관계는 支配會社의 株式所有 때문에 成立하는 것이 아니라 影響력있는 特殊個人 또는 創業主와 그의 特殊關係人들이 個人所有의 形態로 株式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關係인 支配·從屬會社에 대해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企業公開의 過程에서 처럼 株主와 그의 親

族 및 特殊關係人을 1人으로 보는 制度的 補完 推置도 필요할 수 있다. 현재 「企業公開促進法」 第5條, 「企業公開促進法 施行令」 第7條, 「法人稅法」 第22條에서는 株主와 特殊關係人에 대한 定義와 株式所有의 制限이 규정되어 있다. 聯結財務諸表의 作成義務에 이러한 規定을 準用하는 것은 飛躍이며 非民主的으로 誤用될 가능성이 많아서 實現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實務的으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法人間의 株式投資에 의해서만 支配·從屬關係가 형성되거나 系列企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支配會社의 株式所有比率에 의해서만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實効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3. 聯結財務諸表의 必要性和 效用

聯結財務諸表는 支配·從屬會社의 關係에 있는 數個의 會社가 個別的으로 財務諸表를 公表하는 것 보다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이러한 利點은 聯結財務諸表의 必要性和 效用이 된다.

첫째로, 聯結財務諸表는 支配·從屬會社의 財政狀態·經營成果에 대한 全般的인 概觀(comprehensive picture)을 經濟的 單一體의 觀點에서 알 수 있게 해준다. 財務諸表利用者는 支配·從屬會社에 대한 財務報告를 연결하여 經濟的 單一體로서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情報는 個別財務諸表에서는 얻을 수 없다.

원래 聯結財務諸表는 支配·從屬會社間의 關係를 經濟的 觀點에서 統一된 單一會社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支配會社株主의 立場에서 볼 때에 聯結하지 않은 從屬會社가 있다는 사실은 支配會社의 經濟的 狀態에 대한 충분한 情報를 提供하여 주지 못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支配·從屬會社의 關係가 原料供給·資金貸借·經營者交流·投資關係·販賣活動에 있어서 密接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支配·從屬會社를 모두 聯結하여 財務諸表의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聯結財務諸表는 특히 支配會社의 立場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支配會社의 支配權에 있는 從屬會社의 財政狀態·經營成果를 충분히 표시해

주지 못하면 不完全한 會計報告書가 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로, 聯結財務諸表는 不當한 會計操作·利益操作(income manipulation 또는 income smoothing)을 어느 정도 防止할 수 있다. 어느 企業의 經濟的 狀態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企業의 財務諸表分析만으로도 判斷을 그르칠 危險이 있다. 예를 들면, 支配會社가 從屬會社를 개입시켜 不當한 經理操作을 하는 事例가 있다, 이는 聯結財務諸表를 制度化함으로써 紛飾決算을 防止하고 企業會計의 健全化에도 寄與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特定企業의 利益을 높이기 위하여 關係會社에 높은 價格으로 賣出하였다가 다음 期에 商品을 還入하면 期間損益이 操作된다. 또 會計期間末에 支配會社는 正常的 商去來에서는 販賣될 수 없는 在庫資産을 從屬會社에 강제로 引受케 함으로써 販賣額을 增大시킬 수 도 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關係會社의 賣出額·債權債務의 內容을 綿密하게 檢討하고, 個別財務諸表의 상세한 分析이나 聯結財務諸表를 작성케 함으로써 內部去來가 相計除去되어 經理操作을 어느 정도 防止할 수 있다. 紛飾決算의 歷史의 事例로서는 美國에서 1929年 銅의 獨點資本인 Anaconda會社가 金融資本家인 P. Rockefeller 등의 指揮下에서 從屬會社들을 시켜 大量의 自己株式(treasury stock)을 買入케 함으로써 불과 수주일만에 2.25億달라의 損害를 投資者들에게 끼쳤던 事例가 있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 되더라도 聯結財務諸表에 모든 關係會社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完璧한 經理操作의 防止手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株式所有比率이 過半數 未達인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해서 賣出이나 買入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會計操作의 餘地는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聯結財務諸表는 聯結納稅申告制度(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의 採擇으로 企業課稅의 실질적인 合理化에 寄與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聯結財務諸表가 稅制上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企業會計上으로만 고려되고 있

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는 個別會社의 所得稅申告에 의하여 高率의 累進稅下에서 支配·從屬會社 그룹內의 所得은 적당히 移轉시키거나 分散시키므로서 租稅回避를 하게 되는 個別所得計算의 短點을 시정하기 위하여 導入될 수도 있다.

聯結納稅申告制度는 1917年 美國에서 처음 실시되고 한동안 廢止된 적도 있었으나 1940年 復活되어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현재 美國에서는 關係會社集團(affiliated group)에 한하여 個別納稅申告(separate tax return) 또는 聯結納稅申告(consolidated tax return) 중에서 擇一하도록 企業의 自意에 맡기고 있다. 關係會社集團에 속하기 위해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의 議決權 있는 株式 80% 以上을 所有하여야만 되며, 또 이를 國內所在 會社에 한하여 適用하므로써 단순한 聯結基準인 株式所有比率 50% 보다는 훨씬 높은 基準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稅務當局에서는 아직 聯結納稅申告制度의 導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個別會社의 課稅所得이 서로 相計되어 결과적으로는 稅收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稅制上의 導入을 아직 꺼려하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면, 經營成績이 良好한 會社와 不良한 會社의 純利益을 합치면 中和되어 낮은 純利益이 되어 納付稅額은 결과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이 經濟的으로 單一會社의 觀點에서 支配·從屬會社를 연결한 것이므로 聯結財務諸表에 의해 산출된 稅額이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企業會計上으로는 聯結財務諸表를 制度化하고, 稅務會計上으로는 制度化하지 않는 것도 自家撞着의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聯結納稅申告制度가 脫稅의 手段인가 아니면 防止手段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意見이 있다. 脫稅手段이 된다고 함은 聯結納稅申告制度로 인하여 稅收의 減少가 되어 合法的인 租稅回避의 手段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脫稅防止手段이 된다고 함은 聯結納稅申告制度가 없었더라면 關係會社間에 所得을 적당하게 配分 移動시키므로써 脫稅할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로, 聯結財務諸表는 政府의 企業管理나 企

業規制에도 이용될 수 있다.

金融團의 與信管理協定에서는 聯結財務諸表에 의하여 系列企業群에 대한 財務構造와 損益狀態를 분석하여 聯結財務諸表를 與信管理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貸出企業에 대한 與信管理에 聯結財務諸表를 이용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별로 類例가 없는 것으로 注目되는 것이다. 個人企業을 數個 만들어, 수많은 系列企業을 傘下企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企業風土에서는 經濟的으로 聯結되어 있는 系列企業 全體에 대한 企業管理로서 聯結財務諸表가 有効適切한 管理手段이 되고 있다. 聯結財務諸表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論議되기 시작한 것은 企業會計上の 必要에서가 아니라 貸出管理의 必要에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로니(irony)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聯結財務諸表는 金融團의 貸出管理 뿐만 아니라 證券監督院, 證券去來所 등의 投資者保護와 健全한 證券市場의 발달을 目的으로 한 規制機關에 있어서도 중요한 規制手段이 되리라고 展望된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 美國에서 1933, 1934年の 證券法, 證券去來法에 따라 聯結財務諸表가 制度化된 動機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聯結財務諸表의 限界

聯結財務諸表는 支配・從屬會社の 財政狀態・經營成果를 綜合的으로 표시해 주는 有用性(usefulness)을 갖고 있지만 個別財務諸表가 갖고 있는 効用性을 완전히 代置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記述하는 聯結財務諸表의 여러가지 缺點은 聯結財務諸表를 分析할 때에 특히 留意하여야 할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聯結財務諸表에 표시된 金額을 기초로 한 統計的 分析(statistical analysis)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갖고 있다.

支配・從屬會社の 計定을 단순히 統合함으로써 계산된 經營比率(financial ratios)은 여러 企業의 計定科目을 단순히 合算한 加重平均値(weighted averages)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聯結財務諸表에 있어서는 經營分析에 흔히 이용

되는 比率分析은 限界를 갖는다.

加重平均値에 의한 經營比率의 信賴度(reliability)는 聯結되는 각 個別會社間에 존재하는 變化度(degree of variability)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企業의 經營狀態가 脆弱한 會社와 健實한 會社の 각 計定을 合算(summation)하는 과정에서 平均化(averaging)가 된다. 이러한 平均値는 단지 不正確한 記述的 經營指標(inaccurate descriptive index)가 될 뿐이며 財務諸表利用者에게 企業內容을 그릇되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流動資産이 A會社는 ₩1,000 B會社는 ₩500, C會社는 ₩300, D會社는 ₩200 이고, 流動負債는 A會社는 ₩400, B會社는 ₩300, C會社는 ₩200, D會社는 ₩100이라고 하면, 聯結財務諸表上 流動比率는 200%의 標準比率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綜合的인 加重平均値를 나타내는 것이며, A會社는 250%로 높고, C會社는 150%로 낮은 流動比率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聯結對象이 되는 각 個別會社の 會計原則, 會計處理의 節次가 統一되어 있지 않으면 각 個別會社の 計定이 다르게 分類(classification), 評價(valuation)되기 때문에 比較可能하지 못하여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이 無意味해질 수 있다.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構成會社の 會計組織(accounting systems)을 統一시키고, 計定の 分類・評價도 統一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이나 減價償却方法, 資本의 支出과 收益의 支出의 適用原則이 서로 支配・從屬會社間에 다를 경우에는 단순히 이들 會社の 計定金額을 合算하는 것은 妥當치 않은 것이다. 특히 個別企業의 業種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計定科目의 分類라든가 適用된 會計原則의 統一에는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

支配・從屬會社가 채택한 會社處理의 原則 및 節次가 계속적으로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고 있더라도 相異한 處理의 原則 또는 節次를 적용하면 純利益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으므로 聯結目的을 위하여 반드시 統一하는 것이 좋다. 在庫資産의 價格決定에 있어서 어느 企業이 先入先出法에 의하고, 다른 企業은 後入先出法에

의할 때 두 金額을 단순히 합치는 것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각 會社間의 會計處理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同一한 原則에서 계산된 金額이 아니므로 論理의 矛盾을 갖게 되어 各급적 會計原則·節次를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로, 聯結財務諸表는 株主, 小數株主, 債權者, 財務分析家 등 財務諸表利用者の 입장에서 볼 때에 많은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 특히 株主, 債權者에게 歸屬하는 貨幣的 持分(monetary equities)은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

株主(stockholders)의 경우에는 配當金 分配를 위한 利益剩餘金의 配當可能性에 대해서 잘못 誤認될 수 있다. 從屬會社의 純利益(net income)은 從屬會社의 株主總會에서 공식적으로 配當決議가 있어야만 配當可能한 것인데, 이러한 配當決議가 없으면 從屬會社의 利益剩餘金은 모두 配當可能한 것이라고 斷定해서는 안될 것이다. 聯結財務諸表上 巨額의 利益剩餘金은 반드시 個別企業의 株主에게 配當되는 것은 아니다. 個別會社중에는 純損失이 생겨 配當을 못받게 되지만 聯結財務諸表上에는 純利益이 많이 생긴 企業이 있어 配當可能利益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聯結財務諸表를 기초로 配當政策을 세우거나 豫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小數株主(minority stockholders)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聯結財務諸表에 표시될 計定은 個別會社의 計定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小數株主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도움이 되는 情報가 아니다. 小數株主는 그들이 投資한 個別財務諸表의 純資產에 대해서 直接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 支配會社에 대해서 直接的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投資한 資源에 관련된 法律的 實體(legal entity)에 대해서만 株主로서의 地位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小數株主의 이러한 利害關係는 支配·從屬會社內의 小數株主에게 모두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小數株主에게는 個別財務諸表가 聯結財務諸表보다는 더 의미있는 情報가 된다.

債權者(creditors)의 請求權도 個別企業에 대한 것이며 經濟的 單一體로서의 支配會社에 대한 것

은 아니다.

債權者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하나는 負債의 단순한 合算은 각 個別債權者가 特定企業의 資產에 대해서 請求할 수 있는 法律的 權利를 모호하게 만드는 結果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각 個別會社의 債權者는 聯結財務諸表上의 資產에 대해서 請求權을 갖는 것이 아니라 個別會社의 資產에 대해서 갖는다. 각 債權者는 個別會社의 財政狀態와 純利益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며, 個別會社에 대해서만 貨幣的 請求權을 갖는다.

또 하나는 聯結財務諸表에 표시되어 있는 流動負債·固定負債는 債權者에게 企業의 短期支給能力·長期支給能力에 대해서 混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關係會社중에는 短期支給能力이 좋은 會社와 나쁜 會社가 中和되어 버릴 수 있다. 또 負債의 借入契約에 따라서는 流動比率와 같은 經營比率를 一定水準으로 유지하여야 할 때에 聯結財務諸表에서는 요구된 經營比率를 지켰는지 또는 債務不履行으로 危險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것도 債權者의 權利가 個別財務諸表의 資產에 대해서 있기 때문이다.

財務分析家(financial analysts) 또는 證券分析家(security analysts)의 입장에서 聯結財務諸表는 잘못 이해될 수 있다. 財務分析家의 입장에서 聯結財務諸表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하나는 平均化(averaging)에 의한 經營比率分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比率分析의 問題는 最高經營者나 經營主의 支配權 또는 意圖에 따라 다르다. 만일 最高經營者의 支配權이 커서 從屬會社間에 資源을 마음대로 移轉시킬 수 있으면 聯結財務諸表上의 經營比率는 精確한 것이 된다. 그러나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에 대한 投資를 聯結그룹으로서 중요시할 수도 있고 단지 一時的인 投資로 별로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에는 財務分析家의 입장에서 볼 때에 聯結財務諸表는 별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聯結範圍에 포함되는 從屬會社의 業種이 각각 다른 경우 資產의 각 計定科目이 財

務分析家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聯結財務諸表의 流動資産중 在庫資産에 不動産會社의 土地, 化學工業의 化工藥品, 製菓會社의 菓子類가 포함되어 있다면 投資者에 따라서는 在庫資産金額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네째로,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으로 個別會社 固有의 情報를 알 수 없고, 關係會社間의 內部去來(internal transactions)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情報를 알고 싶어하는 財務諸表利用者에게는 不利益이 될 수도 있다.

個別會社의 財政狀態와 經營成果가 聯結財務諸表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財務諸表利用者에게 個別會社 固有의 會計情報를 聯結財務諸表에서 얻을 수 없다. 財務諸表利用者에 따라서는 聯結財務諸表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小數株主라든가 債權者가 있으며 稅務署는 個別財務諸表에 근거하여 課稅하므로 個別財務諸表가 더 중요하다.

또 聯結財務諸表上에는 聯結對象 各 企業間에 발생하는 內部去來의 賣出·買入, 配當金의 授受, 債權·債務, 關係會社間의 固定資産의 取得·建設, 自己株式·自己社債의 取得 등 많은 內部去來가 外部에 노출되지 않고 相計除去될 수 있다.

이와 같이 個別財務諸表 固有의 會計情報, 聯結財務諸表上 除去되는 事項으로 聯結財務諸表의 限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財務諸表利用者에 따라서는 필요한 情報欲求(information needs)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것은 聯結財務諸表의 長點인 동시에 短點이기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聯結財務諸表의 여러가지 限界點에도 불구하고 聯結財務諸表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個別財務諸表나 部門別 情報는 2次的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會計專門家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個別財務諸表가 중요시되어 왔지만 外國처럼 聯結財務諸表를 主要財務諸表로 간주하고 個別財務諸表는 聯結財務諸表의 상세한 內容을 표시하는 것으로 2次的으로 중요한 것이 될런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

무슨 聯結財務諸表의 相對的 重要性은 지금 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II. 聯結方針

聯結方針 또는 聯結政策(consolidation policy)은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基礎가 되는 方針으로서 일반적으로 聯結方針에는 (1) 聯結基準 (2) 聯結範圍 (3) 聯結財務諸表의 作成基準日 (4) 聯結을 위한 會計處理基準이 포함되어 있다(財務諸表規則 第85條). 따라서 本稿에서는 聯結方針중에서도 聯結基準과 聯結範圍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聯結基準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從屬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判斷基準으로서 聯結基準(criteria for consolidation)이 있다. 이러한 聯結基準은 聯結範圍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언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聯結財務諸表의 作成時期(when to consolidate)에도 관련이 된다.

聯結基準에는 기본적으로 主要基準과 追加的基準으로 <表 1>처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主要基準은 聯結範圍를 결정할 때에 基本的으로 고려하여야 할 基準으로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權(control)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

<表 1> 聯結基準

{	主要基準 (支配力基準)	{ 株式所有比率基準 } { 經營支配基準 }	擇一
	追加的基準	{ 經營活動類似性基準 } { 會計期間基準 } { 實現基準 } { 繼續性基準 } { 重要性基準 }	充分條件

라 聯結範圍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除外하게 된다. 追加的基準은 主要基準을 補充하는 基準으로서 主要基準은 充足시키더라도 遵守되어야 할 追加的인 要求條件이다.

支配力基準(control)은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대해서 支配的 財務持分(controlling financial interest)이 있을 때에는 支配·從屬會社를 대상으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포드(Norton M. Bedford)에 의하면 支配的 財務持分이란 “從屬會社의 經營活動을 指揮할 수 있는 能力”(ability of the parent company's management to direct the operational policies of the subsidiary)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支配的 財務持分の 존재는 集權的이고 綜合的인 支配的 財務持分(centralized and integrated controlling financial interest)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支配會社의 經營者가 從屬會社의 經營活動을 완전히 支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支配力基準은 株式所有比率 50% 超過의 所有與否를 가리킨다. 그러나 支配力基準은 株式所有比率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經營活動上의 支配인 經營支配를 실질적으로 하나냐의 與否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株式所有比率基準 또는 經營支配基準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에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 두개의 條件은 사실상 必要充分條件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財務諸表規則에서는 株式所有比率基準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實務上의 便宜(convenience)와 客觀性(objectivity)의 原則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原則을 따르더라도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때에는 支配會社에서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權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經營權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업무에 두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主要基準(支配力基準)

(1) 株式所有比率基準

支配力基準중에서도 株式所有比率基準(voting control)은 전통적으로 聯結基準의 代表的인 基準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이다. 持主比率基準이라고도 하는 株式所有比率基準은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發行株式總數(議決權 없는 株式은 除外)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는 基準이다. 즉, 聯結財務諸表에 포함시킬 從屬會社의 範圍를 議決權 있는 株式의 過半數 所有의 與否에 따라 決定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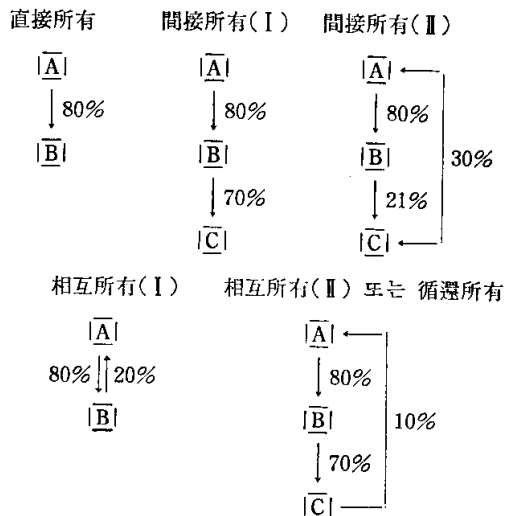
株式所有比率基準은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대

한 財務的 支配持分(controlling financial interest)의 존재여부를 株式所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株式所有比率이 50%를 초과하였을 때에 財務的 支配持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聯結基準이라고 하면 株式所有比率基準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株式所有比率에 따라 支配會社가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權을 갖고 있다는 傳統的 支配概念(traditional concept of control)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美國, 英國, 日本에서는 株式所有比率基準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財務諸表規則에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가 從屬會社의 發行株式總數(議決權 없는 株式은 除外)의 過半數株式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면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財務諸表規則 第77條).

株式所有比率을 聯結基準으로 할 때에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을 50% 超過하여 소유하는 관계는 直接所有(direct stockholdings)의 관계뿐만 아니라 間接所有(indirect stockholdings)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圖 1>에서 보면 直接·間接·相互所有의 관계가 圖示되어 있다. 株式所有比率에 의하여 直接所有에서는 A가 B에 直接投資하는 관계이며, 間接所有에서는 A가 C를 B를 통하여 間接적으로 소유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間接所有에서 A와 B, B와 C는 直接所有의 관계이다. 특히 間接所有(II)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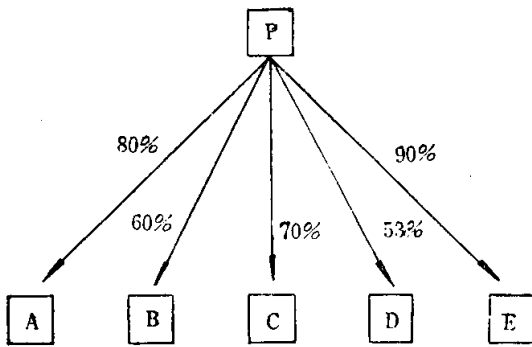
<圖 1> 株式所有의 形態—投資持分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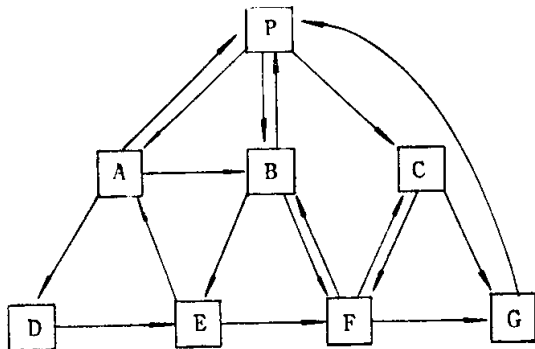
나라의 財務諸表規則 第77條의 3에서 인정하는 形態로 A와 C, B와 C의 株式所有比率를 합하여 過半數를 超過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支配·從屬會社의 關係는 支配會社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從屬會社가 얽힘으로써 相互所有(reciprocal stockholdings), 循環所有(circuit stockholdings)까지도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株式의 間接·相互所有는 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形態는 <圖 2>에 나타난 것처럼 1個의 支配會社 밑에 數個의 從屬會社가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形態가 가장 많은 듯하다. 株式所有關係는 <圖 3>처럼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는데 이러한 例는 거의 드물며 이 경우에 각 會社別 持分計算은 매우 복잡하게 된다.

傳統的인 聯結基準으로서 가장 중요시되어 온 基準인 株式所有比率基準은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批判되고 있다.

<圖 2> 一般적으로 많은 株式所有形態



<圖 3> 複雑한 株式所有形態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를 50%以下 소유하더라도 支配會社에서는 從屬會社를 支配할 수 있다. 會社의 株式가 수많은 株主에게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있는 現代企業에 있어서는 10~30% 정도의 株式所有만으로도 능히 支配權을 행사할 경우가 많다. 오늘날 株式가 널리 分散되어 있는 경우에는 群小株主들은 株主總會에 출석하여 議決權을 行使하려 하지 않고 또 少數의 寡占株主들이 談合하여 몇몇 株主만의 株式으로도 支配權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를 50%以下 소유하더라도 20%정도 이상만 가지면 支配的 財務持分(controlling financial interest)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實務적으로는 株式所有比率가 50%以下일 때에도 支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客觀的으로 立證하기 곤란하고 合作企業에서 처럼 1個의 從屬會社에 대해서 2個의 支配會社가 존재하는 경우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50%를 超過한 株式所有比率基準을 聯結基準으로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2) 經營支配基準

經營支配基準(managerial control 또는 management control)은 支配會社가 從屬會社를 經營的으로 支配하여 從屬會社의 經營活動에 대해서 經營權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會社에 대한 經營支配는 株式의 所有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小額株主이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1株의 株式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經營權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巨額의 銀行借入金을 償還하지 못하여 管理企業體로 轉落된 企業은 借入契約에 따라 銀行으로부터 支配를 받게 되고, 系列會社가 下請會社를 支配하는 경우, 賃貸借契約에 따라 賃貸한 資産에 대해서 支配權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도 株式의 所有 없이 經營權을 장악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會計學者나 會計實務家들은 多數所有持分(majority ownership)이 존재하지 않은 株式所有比率 50%以下에 있어서의 經

營支配만으로 聯結財務諸表에 從屬會社를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株式所有比率 50% 超過”라는 의미가 반드시 經營支配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美國會計學會의 Supplementary Statement No. 7에 의하면 “經營支配란 각 構成會社가 企業의 部・課(departments)나 支店(branch)으로서 經營活動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經營支配를 하기 위해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를 經營의으로 支配하여 統合된 經濟的 單一實體로서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38年 발표된 콜러(Eric L. Kohler)의 論文, 1944年 발표된 무닛츠(Maurice Moonitz)의 聯結範圍 制定基準에서도 經營支配基準을 중심으로 聯結範圍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英國, 獨逸, 프랑스에서는 經營支配基準을 原則으로 하면서 實際面에 있어서는 그 適用이 곤란하므로 株式所有比率基準을 취하고 있다. 英國의 1943年 會社法(Companies Act)에 의하면 “B會社가 A會社의 株主이며, A會社의 理事會 構成(composi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을 支配하는 경우”, “B會社가 A會社 株式資本持分(equity share capital) 名目額의 過半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모두 聯結財務諸表의 작성을 인정하여 他會社의 實質的 支配인 經營支配基準, 株式所有比率基準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株式所有比率基準에 의하여 聯結與否를 결정할 때에는 所有株式에 의하여 算術的으로 持分の 計算을 할 수 있지만 經營支配基準에 의할 때에는 恣意性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客觀性(objectivity)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經營支配基準은 단독으로 적용될 수 없는 限界를 갖고 있지만 聯結財務諸表는 株式所有比率基準과 經營支配基準을 모두 充足시키는 條件下에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基本的인 精神인 것이다. 이것은 특히 經營支配基準을 중요시하여 支配會社의 株式所有比率이 50%以下 20%以上인 非聯結從屬會社(unconsolidated subsidiaries)의 경우에는 持分法(equity method)을

적용하여 支配會社의 投資計定에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한 持分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이유도 되는 것이다.

나. 追加的 基準

(1) 經營活動類似性基準

經營活動類似性基準 또는 同質性基準(similarity of operations 또는 homogeneous operations)이란 支配・從屬會社間의 經營活動 類似性에 따라 聯結與否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의 營業이 완전히 異質的(heterogeneous)이어서 統合하여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기 보다는 각각의 個別財務諸表를 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때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基準이기도 하다.

이 基準에 의하더라도 製造會社와 販賣會社는 서로 聯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現代企業에 있어서 製造・販賣過程이 결합된 경우가 많고 同一會社內에 製造機能과 販賣機能이 함께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비록 별개의 法人體로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同一系列會社이기 때문이다. 또 製造會社間, 販賣會社間에는 業種이나 取扱品目이 다르더라도 서로 聯結하여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化學工業, 電子工業, 纖維工業, 食品工業, 洋灰工業을 영위하는 會社들간에는 製品의 異質性이 존재하지만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製造・販賣會社間에는 製品의 異質性, 異質的 經營活動에 상관없이 聯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비록 支配・從屬會社間에 經營活動의 同質性(homogeneity)이 없다고 하더라도 投資者 등 財務諸表利用者에게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公表함으로써 經濟的 意思決定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有用性(usefulness)이 있다면 작성하여야 한다는 觀點에서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基準에 의하면 製造・販賣會社와 金融機關(銀行, 保險會社, 短資會社, 相互信用金庫), 非營利機關(教育機關, 慈善團體, 育英財團研究團體) 등과는 聯結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이들은 經營活動의 內容이 현저하게 다르며, 計定科目의 內容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고, 經

營活動의 目的(예, 營利追求 對 非營利追求) 자체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간에는 計定科目조차 달라서 實務의으로도 計定科目을 統合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業種, 事業目的, 計定科目이 상당히 다른 경우에는 聯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外國의 會計規定에서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때로는 모호한 경우도 있어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證券會社나 不動產會社는 營利目的의 事業이지만 計定科目의 分類上 문제가 있어 製造・販賣會社에 聯結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反論이 提起될 수 있다. 특히 不動產會社의 土地는 在庫資產 성격이고, 製造・販賣會社에서는 固定資產인 것이다. 그러나 現代企業은 系列化(segmentation), 多角化되어 가는 趨勢이므로 經營活動이 약간 상이하더라도 統合하여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會計規定에는 經營活動의 類似性에 관한 基準이 없는데, 美國・日本의 경우에는 明文化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規定에 없으므로 外國規定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만, 外國規定도 우리나라 規定과 相反되지 않는 한「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外國規定을 準用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規定에 없다고 해서 支配・從屬關係에 있는 企業은 經營活動에 관계없이 無分別하게 聯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會計期間基準

會計期間基準(different fiscal periods)은 支配・從屬會社의 關係가 성립하더라도 會計期間(fiscal period)의 相異때문에 聯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會計期間基準을 이유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聯結財務諸表作成의 回避口實은 되지 못한다. 단순히 支配・從屬會社의 會計期間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企業에서는 보통 每月 決算하는 경우가 많으며, 中間報告書

(interim reports, 分期別報告書 또는 半期報告書)가 작성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財務諸表規則 第79條(聯結財務諸表 作成基準日)에서 “從屬會社는 그 決算日이 聯結財務諸表 作成基準日前 3月 以上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기 위한 財務諸表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從屬會社決算日이 支配會社의 決算日과 3個月 以上の 差異가 있을 때에는 正規決算에 準한 假決算을 함으로써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支配會社와 從屬會社의 會計期間에 아무리 差異가 나더라도 聯結한다는 뜻이 된다.

(3) 實現基準

實現基準(realizability)은 支配會社의 입장에서 볼 때에 從屬會社 資產의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基準이다. 財務諸表規則 第78條에서는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로서 “外國에 있는 會社로서 그 所在國의 法令에 의하여 資金移動에 制限을 받을 경우”와 “戰爭,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事由가 발생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支配會社의 從屬會社에 대한 持分の 請求與否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흔히 後進國으로 政情이 不安한 國家, 左傾國家에서 外國의 投資資產을 沒收하는 事例가 많은데, 이러한 宣言이 있거나 그러한 危險에 직면한 國家에 있는 從屬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는 것은 資產의 現金化 實現性(realizability)에 비추어 보아 타당치 않는 것이다. 특히 從屬會社가 위치한 國家에 戰爭, 天災地變, 구데타 등 狀況이 있어서 資產의 實現與否가 不明確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聯結範圍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 外國所在 從屬會社의 경우 所在國의 外換率이 극심하게 變動하고 있을 경우에도 資產評價의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聯結해서는 안될 것이나 최근 일어난 바와 같은 鎊鎊下墜, 마르크貨・엔貨切上과 같은 事態는 資產評價가 不確實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영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財務諸表規則 第78條에서는 資金移動에 制限이 있을 경우에만 外國所在의 從屬會社를 聯結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制限이 없을 경우에는 外國所在의 從屬會社일지라도 聯結範圍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繼續性基準

繼續性基準(continuity in control)은 株式所有가 一時的(temporary control)일 때에는 從屬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基準이다.

支配會社가 從屬會社를 繼續적으로 支配할 것인가 아니면 一時的으로만 所有하는 것일까 하는 判斷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 이것은 流動資産인 有價證券과 投資資産인 關係會社株式를 區分하는 것과 同一한 問題이다. 支配會社의 株式投資가 단지 一時的 株價差益을 위한 것이라면 聯結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이 繼續性基準은 支配會社의 株式所有라는 觀點에서 본 繼續性 이외에도 從屬會社가 繼續企業(going concern)으로서 영구적으로 존속할 것인가의 與否도 聯結範圍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基準이 된다. 財務諸表規則 第78條에 의하면 會社 整理節次 開始의 會社, 清算中の 會社, 破産宣告가 있는 會社에 대해서는 聯結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이들 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企業이 永續적으로 存續하리라고 하는 繼續企業의 假定에 어긋난 것이 된다. 繼續企業의 假定이 前提되지 않는 會社에 대해서는 資産을 取得原價인 歷史原價(historical cost) 보다는 清算價値(liquidation value)로 評價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때에 聯結對象의 會社들은 取得原價로 資産이 評價되고, 繼續企業이 아닌 會社의 資産은 清算價値로 評價된다면 資産評價에 있어서 각각 다른 評價基準을 적용하게 되어 問題點이 있게 된다. 따라서 繼續企業의 假定이 前提되지 않는 이들 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는 것은 妥當치 않을 것이다.

(5) 重要性基準

重要性基準(materiality)이란 企業規模, 財産狀態, 從屬會社 經營活動의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에 從屬會社가 支配會社에 대해서 重要하지

않으면 聯結하지 않고 重要하면 聯結한다는 基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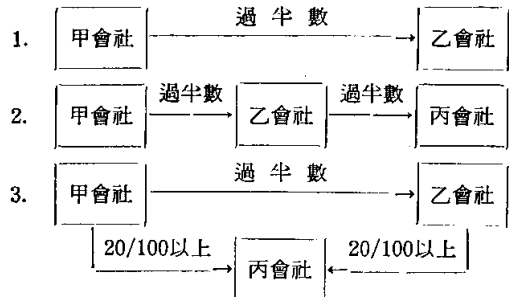
財務諸表規則 第18條에 의하면 “從屬會社의 資産總額이 支配會社 資産總額의 100分の 5 以下이고 支配會社와 一般의 商去來가 없는 경우”에는 聯結對象에서 從屬會社를 除外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財務諸表規則에서는 重要性基準으로서 從屬會社의 資産이 支配會社 資産의 5/100 以下인 경우 聯結하지 않아도 좋다는 實務的 便宜에서 重要性基準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財務諸表規則에서는 從屬會社의 資産이 支配會社 資産의 5/100 以下일지라도 「一般의 商去來」가 있을 경우에는 聯結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明瞭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聯結範圍

聯結範圍에 대해서는 財務諸表規則 第77條, 78條에서 다루고 있다.

財務諸表規則 第77條 (從屬會社의 範圍)에서는 <圖 4>의 경우 甲·乙·丙會社 사이에는 支配·從屬會社의 關係가 成立한다고 되어 있다. <圖 4>의 1은 甲會社가 乙會社를 直接所有(direct stockholding)하는 關係이며, 2는 甲會社가 乙會社를 통하여 兩會社를 間接所有(indirect stockholding)하는 形態이다. 이때 乙會社는 下位支配會社(subparent) 또는 子會社(son)라고 하며, 丙會社는 孫會社(grandson)가 된다. 3은 약간

<圖 4> 從屬會社의 範圍(財務諸表規則 第77條)



단, 甲·乙의 丙에 對한 株式所有는 各各 20/100 以上 所有하되, 合하여 過半數가 될 것.

(예, 甲이 丙을 20%, 乙이 丙을 31% 所有할 때)

4. 위의 1, 2, 3과 동일한 방법으로 株式를 所有하여 支配會社가 또 다른 會社를 支配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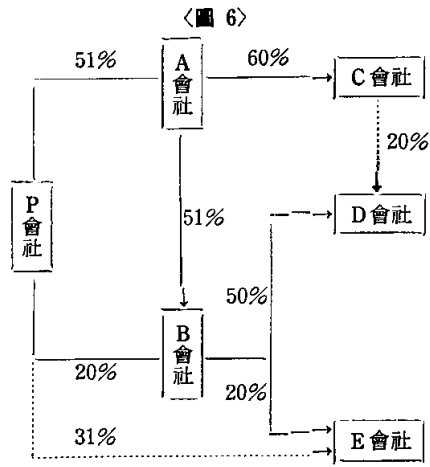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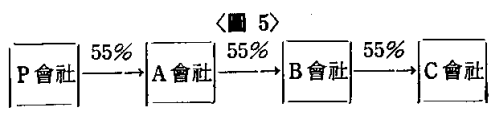
特異한 경우로서 甲·乙會社間의 關係가 支配·從屬會社의 關係이면서 각각 丙會社에 대해서 20% 以上の 株式을 갖고 있어 합하여 50%를 超過하면 甲·乙·丙會社 사이에는 支配·從屬會社의 關係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이 丙을 10% 所有하고, 乙이 丙을 40% 所有하는 경우에는 聯結하지 않는다는 解釋이 나올 수 있다.

財務諸表規則 第77條에서 例示하고 있는 聯結對象의 從屬會社는 비교적 단순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다. 財務諸表規則 第77條 ②에서는 <圖 4>의 1, 2, 3과 同一한 方法으로 株式을 所有하여 支配會社가 또 다른 會社를 支配하는 경우에도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財務諸表規則 第77條를 응용하여 株式 所有比率基準을 중심으로 聯結範圍의 例를 들어 보자.

<圖 5>를 보면 P會社와 C會社와의 關係는 $55/100 \times 55/100 \times 55/100 = 16.64\%$ 에 불과하다는 數學的 計算이 나올 수 있으나, 支配會社인 P會社は A·B·C會社를 直接·間接所有의 關係로 順次的으로 所有함으로써 P會社は A·B·C會社를 사실상 모두 支配하게 되어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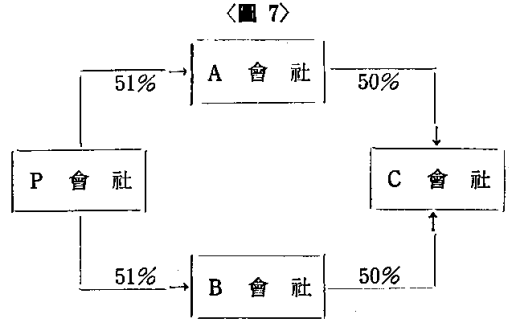
<圖 6>은 支配·從屬關係가 좀더 얽히는 경우



가 된다. 여기서 聯結範圍에 포함되는 會社는 A·B·C 3個會社이며, D·E會社は 非聯結從屬會社(unconsolidated subsidiary)가 된다. D·E會社は B會社와의 關係에 있어서 모두 50% 以上の 株式을 所有하지만 각각 20% 以上の 株式 所有가 되기 때문에 持分法(equity method)에서 특히 重要視되는 非聯結從屬會社가 된다. 이때 B會社와 D·E會社の 關係는 財務諸表規則 第77條에서 例示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圖 4>의 3에서는 甲會社가 丙을 20%, 乙이 丙을 31% 所有하여 聯結하게 되는데 (한편 甲은 乙을 過半數 所有하고), <圖 6>에서 보면 P會社の 株式 所有를 통한 支配는 B會社까지 해당되고 D·E會社は 聯結範圍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P會社가 E會社株式을 31% 所有하면 E會社は 聯結範圍에 포함될 것이고 또 만일 C會社가 D會社를 20%만 所有하더라도 D會社は 聯結되는 從屬會社가 될 것이다.

<圖 7>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P會社가 각각 A·B會社를 直接所有하고, P會社와 C會社の 關係는 株式所有의 관계가 直接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P會社は A·B會社를 통하여 C會社를 間接的으로 實質的으로 支配하게 된다. 따라서 P會社は A·B·C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한다.

위와 같은 例에서 볼 때에 從屬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判斷基準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株式所有比率에 의하여 株式所有關係가 收斂하면 聯結하고, 分散하면 聯結에서 除外된다. 물론 이러한 判斷基準을 적용할 때에는 過半數 또는 둘을 합친 過



半數의 原則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財務諸表規則 第78條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에서는 支配會社가 비록 從屬會社株式을 50%超過 所有하더라도 聯結範圍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이미 聯結基準에서 部分的으로 설명하였지만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경우
- (2) 清算中이거나 破産宣告가 있는 경우
- (3) 外國에 있는 會社로서 그 所在國의 法令에 의하여 資金移動에 制限을 받는 경우
- (4) 戰爭·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事由가 발생할 경우
- (5) 從屬會社의 資產總額이 支配會社의 資產總額의 100分の 5 以下이고 支配會社와 一般的 商去來가 없는 경우

이들 경우에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을 50%超過 所有하여 株式所有面에서는 從屬會社를 支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유때문에 聯結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들 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키는 것은 財務諸表利用者 (financial statement users)로 하여금 判斷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聯結範圍에서 除外하는 것이다.

3. 支配·從屬會社, 關係會社, 非聯結從屬會社의 概念

지금까지 우리는 支配·從屬會社의 關係를 株式所有比率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支配會社는 株式의 直接 또는 間接所有를 통하여 從屬會社를 聯結範圍에 포함시켜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수 있었다.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는 支配·從屬會社의 關係는 財務諸表規則에 의하면 (圖 4)에 있는 바와 같은 것이다. 株式所有關係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를 除外하고는 일반적으로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株式을 50%以上 所有하는 경우 支配·從屬關係가 形成되어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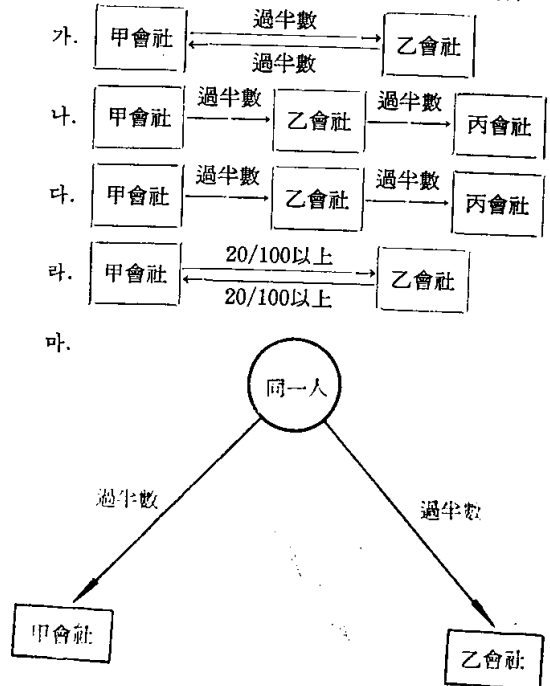
支配·從屬會社라는 用語의에도 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라는 말이 쓰인다. 흔히 關

係會社라는 말은 支配·從屬會社間的 關係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持分法을 적용할 때에 重要的 概念인 株式所有 20%以上 50%以下の 非聯結從屬會社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財務諸表規則 第5條에서 關係會社란 다섯가지로 定義되고 있는데 (圖 8)에 圖示된 바와 같다. 이것은 (圖 4)에서 본 從屬會社의 範圍과 비교하여 볼 때에 支配·從屬會社와 類似하다. 단지 20/100 以上の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까지도 關係會社의 範圍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財務諸表規則의 關係會社에 대한 定義는 株式所有가 20/100 以上일 경우뿐만 아니라 支配·從屬會社의 關係會社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색다르나 (圖 8)에서 「나」, 「다」는 「가」처럼 합칠 수 있고, 또는 「가」, 「나」, 「다」를 없애고 「라」만 둘 수도 있으며, 「마」의 同一人이란 概念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다. 同一人을 寡占株主人 個人을 뜻한다고 誤認하는 수도 있으나 個人에 의한 聯結財務諸表는 작성될 수 없으므로 「同一會社」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關係會社의 의미는 支配·從屬會社

〈圖 8〉 關係會社의 定義(財務諸表規則 第5條)



의 關係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非聯結從屬會社도 때때로 포함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非聯結從屬會社(unconsolidated subsidiaries)란 일반적으로 어느 投資會社가 他 被投資會社의 株式을 20%以上 50%以下 소유한 경우의 會社이다. 또 非聯結從屬會社는 支配會社가 從屬會社 株式을 50%超過하여 소유하지만 財務諸表規則 第78條에 열거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事由로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한 財務諸表規則의 規定은 第84條(非聯結從屬會社와 關係會社에 대한 投資計定の 評價)에서 “聯結에서 除外된 從屬會社와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20 以上 100分の 50 以下를 소유하고 있는 關係會社에 대한 投資計定の 評價는 原則적으로 持分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으로 한다. 다만, 第78條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會社는 원래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聯結財務諸表에서 論議되는 非聯結從屬會社의 評價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20% 내지 50%의 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서는 이들 20% 내지 50%의 株式을 소유하는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해서 原則적으로 持分法(equity method)을 적용하도록 하여 非聯結從屬會社를 支配會社의 聯結財務諸表에 直接 聯結하지는 않지만 從屬會社의 損益, 配當金 實績에 따라 支配會社의 投資計定을 變動시키는 方法을 擇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非聯結從屬會社를 聯結한 것과 類似的한 效果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原價法(cost method) 보다는 進一步된 投資評價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